

경제안보 침해행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안

(장경태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7218
----------	-------

발의연월일 : 2026. 3. 4.

발 의 자 : 장경태 · 박희승 · 한민수
서영교 · 문정복 · 강경숙
김용민 · 김현정 · 박균택
김영호 · 김기표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반도체, 배터리, 인공지능, 첨단소재 등 국가 핵심 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산업기밀의 해외 유출 시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그 수법 또한 조직화·지능화되고 있음. 이러한 산업기밀 유출은 개별 기업의 재산적 손실을 넘어 국가안보와 국민경제 전반에 중대한 위협으로 작용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법체계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등 개별 법률을 통해 산업기술 및 영업비밀을 분산적으로 보호하고 있어, 외국과 연계되어 있는 산업기밀 침해행위를 국가·경제안보 침해행위로 포괄하여 대응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

특히 국가핵심기술이나 국가첨단전략기술이 외국에서 사용되거나

외국 정부 또는 이에 준하는 기관에 제공되는 경우, 그 피해는 사후적 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하며 국가의 전략적 산업 기반과 국제 경쟁력에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손실을 초래할 수 있음. 이에 산업기밀의 외국 유출을 단순한 산업범죄가 아닌 국가·경제안보를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중대 범죄로 규율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이에 이 법안은 국가안보 또는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산업기밀의 외국 유출 및 침해행위를 ‘경제안보 침해행위’로 명확히 규정하고, 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산업기밀 유출에 대한 실효적인 억지력을 확보하고자 함. 아울러 산업기밀의 범위를 국가핵심기술과 국가첨단전략기술 및 이에 준하는 기술로 한정하고, 외국의 개념을 명확히 규정하며, 외국인의 경영상 지배 관계를 포함함으로써 우회적 유출에 대한 규율의 실효성을 높이하고자 함.

이를 통해 국가 핵심 산업과 전략기술을 체계적으로 보호하고, 급변하는 국제 환경 속에서 국가안보와 국민경제의 안정적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경제안보 침해행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경제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산업기밀의 국외 유출 및 침해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고 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업기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 또는 정보를 말한다.

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국가핵심기술

나.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가첨단전략기술

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 중 경제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

2. “외국”이란 외국 정부, 외국 법인·단체(법인이 아닌 사단, 재단

및 그 밖의 단체를 포함한다), 외국인, 그 밖에 외국 정부, 외국 법인·단체 또는 외국인 등이 사업 운영상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내 법인·단체를 말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경제안보 침해의 죄에 대한 처벌에 관하여는 이 법을 우선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정한 형이 이 법에서 정한 형보다 중한 경우에는 그 법률을 적용한다.

제2장 경제안보 침해행위의 처벌

제4조(경제안보 침해의 죄) ① 산업기밀이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이 경우 100억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1. 절취·기망·협박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산업기밀을 취득하는 행위 또는 그 취득한 산업기밀을 사용하거나 공개(비밀을 유지하면서 특정인에게 알리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행위
2. 산업기밀에 대한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자가 그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하여 산업기밀을 유출하거나 그 유출한 산업기밀을 사용 또는 공개하거나 제3자가 사용하게 하는 행위
3. 산업기밀에 대한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자가 산업기밀에 대한 보유 또는 사용 권한이 소멸됨에 따라 해당 산업기밀 보유자로부터

산업기밀에 관한 문서, 도화(圖畵),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이나 원시코드 등의 반환이나 산업기밀의 삭제를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 또는 기피하거나 그 사본을 보유하는 행위

4. 산업기밀에 대한 접근 권한이 있는 자가 정당한 권한 없이 산업기밀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유출하거나 목적 외로 사용·공개하는 행위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고 그 산업기밀을 취득·사용·공개하거나 산업기밀을 취득한 후에 그 산업기밀에 대하여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고 그 산업기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②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5조(예비·음모) 제4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이 경우 10억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제6조(몰수·추징) ① 제4조의 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報酬)로 얻은 재산(이하 이 항에서 “범죄수익”이라 한다)과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은 몰수하고, 이를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價額)을 추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몰수 및 추징에 관하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제10조의3, 제10조의4, 제11조 및 제12조를 준용한다.

제7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장 형사절차상 특례

제8조(산업기밀 보유자의 의견진술 등) ① 제4조의 죄의 대상이 된 산업기밀 보유자 또는 그 대리인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산업기밀 보유자 또는 그 대리인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압수물(전자정보를 포함한다) 선별 및 분석 절차에 참여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산업기밀 보유자 또는 그 대리인은 피의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 증거보전절차, 공판준비기일 및 공판절차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체적인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④ 제1항의 산업기밀 보유자는 또는 그 대리인은 증거보전 후 관계 서류나 증거물, 소송 계속 중의 관계 서류나 증거물을 열람하거나

등사할 수 있다.

제9조(공소시효에 관한 특례) 제4조의 죄에 대한 공소시효의 기간은

「형사소송법」 제24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15년으로 한다.

제10조(비밀유지명령) ① 법원은 제4조의 죄에 관한 소송에서 산업기

밀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권 또는 산업기밀을 보유한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다른 당사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 당사자를 위하여 소송을 대리하는 자, 그 밖에 해당 소송으로 인하여 산업기밀을 알게 된 자에게 그 산업기밀을 해당 소송의 계속적인 수행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그 산업기밀에 관계된 이 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 외의 자에게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비밀유지명령과 그 취소, 비밀유지명령이 내려진 소송에 관한 소송기록 등에 관하여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의4부터 제14조의6까지 및 제18조의4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